성주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. 개정이유

○ 성주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르면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7일에 집회하며, 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차기 구성되는 본회의 의결 또는 재적의원 1/3이상의 요구를 통해 9월·10월 중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총선거 일자가 6월 7일 이후인 6월 13일임에 따라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하여 상충되는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○ 제1차 정례회 집회일자 관련 일부내용 개정(삭제) (안 제4조제1항)

- 현　　행 :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7일에 집회한다. 다만, 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9월·10월중으로 집회 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집회일은 의원 총선거 후 당해연도에 처음 구성되는 의회가 본회의 의결로 미리 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정한다.
- 개 정 안 :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7일에 집회한다. 다만, 총선거(지방선거)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9월 1일에 집회한다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
다. 기　　타 : 조례안예고 (2018. 3. 21~ 3. 27　7일간)

4. 일부개정조례안 : 붙임

성주군 조례 제 호

성주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성주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 본문 중 “다만, 의원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본회의의결을 거쳐 9월·10월중으로 집회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집회일은 의원 총선거 후 당해연도에 처음 구성되는 의회가 본회의 의결로 미리 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정한다”를 “다만, 총선거(지방선거)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9월 1일에 집회한다.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집회일) ①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7일에 집회한다. 다만, 의원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본회의의결을 거쳐 9월·10월중으로 집회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집회일은 의원 총선거 후 당해연도에 처음 구성되는 의회가 본회의 의결로 미리 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정한다. ②·③ (생 략)	제4조(집회일) ①----------다만, 총선거(지방선거)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9월 1일에 집회한다 ②·③ (현행과 같음)